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 394호
- 발 의 자 : 김창원 의원(찬성자 9명)
- 발의일자 : 2019년 1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2월 07일

2. 제안이유

- 최근 관광산업에서 관광수요의 고급화 및 다변화, 융복합 트렌드 등으로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. 특히 최근 k-beauty, k-wedding 등 체험형 관광과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명소 발굴·홍보 등을 포함한 한류관광, 전통음식을 테마로 한 미식투어나 대표사찰과 연계한 럭셔리 템플스테이 상품 등을 포함하는 프리미엄관광 등이 성장하고 있음.
- 이러한 개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.

3. 주요내용

- 재정지원 사업에 의료관광 외에도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을 포함시키고자 함 (안 제12조제1항제12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재정지원 사업에 의료관광 외에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을 포함시켜 개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.

<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>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~ 11. (생략) 12.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13. (생략)	제12조(재정지원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의료관광,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13. (현행과 같음)

- 서울시는 「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」(2019~2023)에서 “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”을 과제로 선정하여 ‘MICE도시 도약’과 ‘융복합 관광산업’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음.
- 서울의 MICE 산업은 상하이, 도쿄,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에 비해 시설규모가 10%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「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 국제회의 지원에 국한되어 MICE 종합육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화관광 범주에서 점차 확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같이 해당사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.
- 한편 융·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개별 관광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융·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함.

특히 K-pop, K-drama 등 한류 열풍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K-beauty, K-wedding 등 체험형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관광객 대비 체류기간이 길고, 지출액이 높은 특성이 있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.

'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창동 ‘서울아레나’(’23년 완공 예정) K-pop 공연 연계, 한류 관광상품 개발과 공연콘텐츠 활용 아트테인먼트 상품 개발, 프리미엄 관광 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,

특화관광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은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조치라 판단됨.

한편 동 조례안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조 같은 항 제13호에서 ‘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’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

특화관광 등 정책사업으로 정착된 사업은 조례에 명문화하여 관련 근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관련 법령

- 제12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1.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
 2.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·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
 3. 우수 숙박시설 지정·육성사업
 4.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
 5.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
 6. 시내순환관광업 육성사업
 7. 관광 상품 개발
 8.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
 9.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
 10.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
 11. 온라인 관광지원 사업
 12.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
- 13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보조금의 신청·지급·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- 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 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